

제34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서초구가족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서초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479호)]



2026.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479 호		
의안명	서초구가족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발의자	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	발의연월일	2026.03.13.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충열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서초구가족센터’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2005년 7월 1일 개소하였으며,
- 현 위탁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이 재위탁 심의를 거쳐 2021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지 6년이 경과하여 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업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향후에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것이며, 이로써 가족관계 개선 및 가족문화 증진 등 가족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초구가족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 필요성

- 가족센터의 다양한 사업은 사회복지 분야의 특수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운영해야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며 시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가족지원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의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이 타당함.

다. 위탁사무 내용

- 가족관계·가족돌봄·가족생활 등 가족을 위한 다양한 통합사업
-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자녀성장·관계향상 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 아이돌봄사업
- 서초엄마힐링센터 및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라.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주소	층수	면적	이용대상	위탁기간	위탁체
서초구가족센터	서초구 방배로10길 10-20 (방배동)	지상4~5층	379㎡	서초구민 등	2021. 8. 1.~ 2026. 7. 31.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마. 민간위탁기간

- 위탁기간 :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연 10,722,658천원 민간위탁금 지급 예상
- 산출근거
 - 사업비 : 8,419,559천원 / 인건비 : 2,037,824천원 / 운영비 : 265,275천원

※ 3개년도(2024년~2026년) 민간위탁금 평균으로 추계

아.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2026년 제2차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등 심의한 결과, 적정 의결로 심의 가결되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의2(가족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나. 추진경과

- 2016. 3. 8. : 제260회 서초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2016. 7. 1. ~ 2017. 6. 30.(1년) : 재계약
- 2017. 7. 1. ~ 2020. 6. 30.(3년) : 재위탁
- 2020. 7. 1. ~ 2025. 6. 30.(5년) : 재계약
- 2021. 4. 8. : 수탁자(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가 계약해지 의사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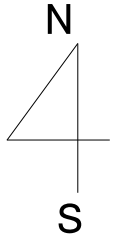
- 2021. 6. 16.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공개경쟁)
- 2021. 8. 1. ~ 2026. 7. 31.(5년) : 재위탁
- 2026. 3. :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다.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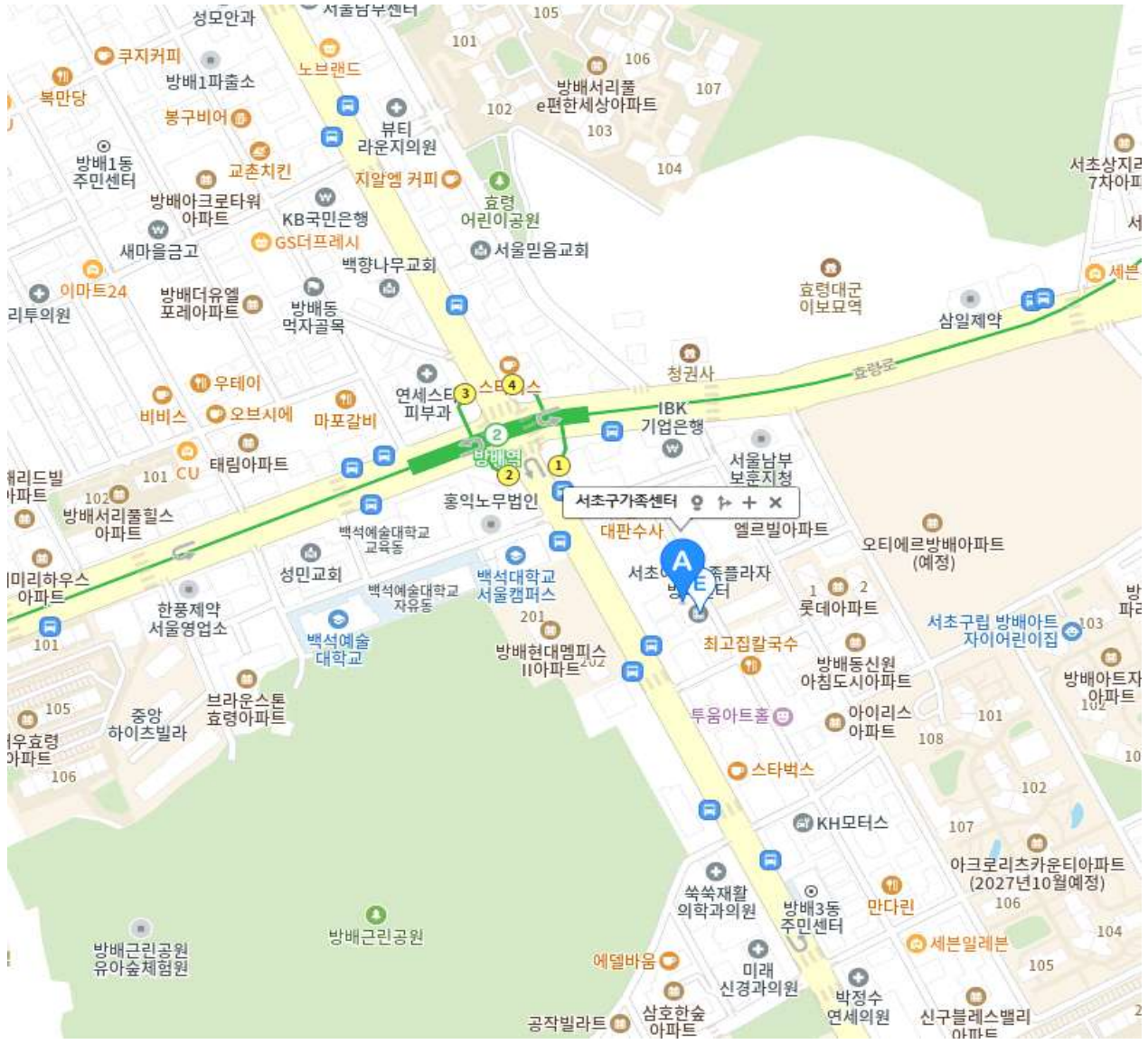
- 2026. 4.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 심의결과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5년), 70점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으로 새로운 수탁자 선정절차 추진
- 2026. 5. : 위·수탁 협약 체결

붙임

시설 위치도



- 시설명 : 서초구가족센터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0-20 (방배동)
- 연락처 : 02-576-2852



지역여건

- 방배역(2호선) 및 내방역(7호선) 역세권 입지
- 남부순환로, 효령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
- 각종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주택이 혼재된 주거 중심지
-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초·방배유스센터 등 유관기관 인근



사진설명

서초구가족센터 외·내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같음한다. 다만,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반복적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고 2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2026년 제2차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등 심의한 결과, 심의위원 6명 적정 의결로 심의 가결되었음.

□ 심의결과 통보서(기획예산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안건명	서초구가족센터 위탁관리 운영(계계약)		
부서명 (주관부서)	여성보육과	부서장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6697)
		팀장	출산장려팀장 박진영 (6714)
		담당자	출산장려팀 진은재 (6717)
시설개요	소재지	(본부)서초구 방배로10길 10-20, 4~5층	
	시설규모	379㎡ (115평) *본부 기준	
	시설용도	서초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예정기간	○ 2026. 8. 1. ~ 2031. 7. 31.(5년)		
사업목적 및 위탁 내용	○ 사업목적 - 서초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건강가정 사업 수행으로 서초구민의 가족관계·가족문화·가족구성원 복지 증진에 기여 ○ 위탁사무 내용 - 가족관계·가족돌봄·가족생활 등 가족을 위한 다양한 통합사업 - 서초엄마힐링센터 및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자녀성장·관계향상 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 아이돌봄사업 등		
	■ 적정		
심의결과	○ 심의일자 : 2026. 3. 4.(수) ○ 심의위원 : 총 10명 중 6명 출석 - 적정 의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2026년 3월 5일 서초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대우/02-2155-6396) 여성보육과장 귀하			

▣ 서초구가족센터 설치 배경 및 운영 현황

1. 가족센터 설치의 정책적 배경

-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가족 형태의 다양화,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가족의 돌봄·양육·관계 지원에 대한 공공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족 증가와 함께 가족 내 갈등, 양육 부담, 돌봄 공백 등 다양한 가족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가족지원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 이에 정부는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와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두 기능을 통합한 가족센터 체계를 구축하여 가족상담·교육·돌봄·다문화 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역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을 근거로 가족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주요 사업 내용

- 서초구가족센터는 가족관계·가족돌봄·가족생활·지역공동체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가족상담, 부모교육,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자녀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 아울러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및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족친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돌봄 기반 확충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 서초구가족센터 운영 현황

- 현재 서초구가족센터는 본부를 중심으로 상담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서초엄마힐링센터를 운영하여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장 1명을 포함한 7개팀 41명(정규직 33명, 계약직 8명)의 종사자가 가족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고,
-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상담 서비스,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 최근 운영 실적을 보면 가족상담, 가족교육, 돌봄 및 문화 프로그램 등 가족지원 서비스 이용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 내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에서 가족센터는 지역사회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핵심 거점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

- 본 동의안은 서초구가족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재계약에 의한 위탁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수행 방식 중 민간위탁 적용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에 해당하고 있으며,
- 서초구가족센터는 가족관계 증진, 가족기능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구조에 있으며,
- 이러한 시설의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과 더불어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을 활용하는 운영 방식이 함께 검토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특히 가족지원서비스 분야는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 체계가 요구되는 영역으로서 운영 방식 선택에 있어 이러한 요소가 고려되는 정책적 환경에 있고,

-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서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등 제도적으로도 해당 시설의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 방식이 활용될 수 있는 구조에 있고,
-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서초구가족센터의 기존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운영 주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 법적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¹⁾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센터에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하며, 건강가정사는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

1)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5. 10. 1.>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제목개정 2025. 4. 22.]

고, 센터의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의2(가족센터)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제3항3)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시행령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4)에서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조의2(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제3항5)에서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제1항 및 제2항6)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 2)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22.][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2025. 4. 22.>]
- 3)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4)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 5) 제4조의2(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30.][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5. 9. 30.>]
- 6)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이하 조항에서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범위와 업무 수행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제3항 및 제5항7)에서는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고,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제1항8)에서는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제3항9)에서는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7) 제9조(운영)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

④ 삭제 <2021. 5. 3.>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 항 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6. 11.>

8)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9)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③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동의안 주요 내용 등

- 위탁시설의 인적·물적 현황은 아래표와 같음.

시설개요 및 인력현황

□ 시설개요

- 센터장 : 조혜진
- 위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대표 송영범)
- 위탁기간 : 2021. 8. 1. ~ 2026. 7. 31.(5년)
- 주요사업 : 건강가정 및 온가족보듬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아이돌보미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서초엄마힐링센터 등
- 조직구성 : 7개팀, 41명 (정규직 33명, 계약직 8명)
- 시설별 세부현황

구분	위치	규모	주요사업
본부	방배로10길 10-20 (방배여성가족시설 4, 5층)	379m ² (115평)	- 가족지원서비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가족학교 운영 등) - 아이돌봄사업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초구 아이돌보미순주돌보미)
상담센터	강남대로 201 (서초문화예술회관 2층)	72.72m ² (22평)	- 개인·부부·가족 대상 가족의 성장을 돕는 가족상담
공동육아 나눔터	사평대로 205 (파미에스테이션 2층)	224.58m ² (68평)	- 놀이공간 제공 - 함께돌봄품앗이, 아빠육아활성화지원사업 등
서초엄마 힐링센터	청계산로9길 70 (내곡SH플라자 3층)	166.46m ² (50평)	- 휴게공간 제공 - 가족 단위 또는 가족 구성원 대상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 인력현황

- 종사자 현황 (2026. 2월 기준)

계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	보조인력 등
41	1	1	7	29	3

- 서초구가족센터는 2026. 7. 31. 기준 위·수탁 협약의 종료기 예정되어 있으며,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제4호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

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형태의 “재계약”에 해당하고, 같은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3항¹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안이며,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1항¹²⁾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 법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사항 역시 같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2항¹³⁾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고,
-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제1항¹⁴⁾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 의견을 거쳐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서초구가족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최근 3개년도(2024년 ~ 2026년) 민간위탁금 평균을 기준으로 추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③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 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구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1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14) 제6조(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2.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비·인력 운영의 적정성
3.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
4.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등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연 10,722,658천원 (민간위탁금)
 ※ 3개년도(2024년~2026년) 민간위탁금 평균으로 추계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세부 내역
3개년 평균	10,722,658 ²⁾	사업비 8,419,559, 인건비 ¹⁾ 2,037,824, 운영비 265,275
		¹⁾ 센터장 포함 40명 내외 기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²⁾ 2026년 기준 국비 13%, 시비 18%, 구비 69%

■ 재계약 관련 참고사항

- 사업추진 실적

현재 서초구가족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의 주요 사업성과(개선실적)는 아래와 같음.

사업성과(개선실적)

	구분	개 선 실 적
사업 주요 성과	가족상담	○ 가족위기·회복지원 모델 구축 -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과 다양한 가족 위기에 대응해 점진적으로 상담 체계와 맞춤형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2021년 3,726명에서 2025년 5,586명으로 전반적으로 상담 수요가 증가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성과인증) 4개년 연속 서울시지원사업 수상 영예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우수기관 인증 · (상담서비스 고도화) 생애주기별 맞춤상담(난임부부~성인자녀 부모)과 다국어 통번역 상담 제공으로 사각지대 없는 가족지원
	취약위기 가족지원	○ 서초형 가족사례관리 모델 정착 - 복합위기가족의 특성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입을 설계하여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지역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021년 3,020명에서 2025년 5,749명으로 이용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구 분	개 선 실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가족 유형 통합 사례관리) 일반·다문화로 분절되던 사례관리를 통합하여 '온가족보듬사업'이라는 단일 창구형으로 운영 • (한부모·청소년부모 지원 고도화) 양육교육에서 자조모임·자녀 멘토링까지 확장하여 가족단위 특화사업 고도화
	서초형 온가족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주·아빠·엄마' 중심 유기적 돌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주돌봄, 아빠육아, 엄마힐링'의 세 축을 중심으로 영유아·아동기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유기적 구조로 운영하였으며, 2021년 5,306명에서 2025년 18,346명으로 실수혜자가 300% 가까이 대폭 증가함 • (돌봄 주체 다각화) 전국 선도적인 '손주돌보미' 사업의 시스템 고도화(지원 기준 완화 및 기간 확대 등)를 통해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공식 인정하고, '서초프렌대디' 등 아빠 전용 프로그램으로 성평등한 맞돌봄 문화 확산 • (양육자 정서 회복) 테마형 힐링 프로그램 강화로 양육자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가족 전체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온가족 돌봄 체계 공고화

○ 언론보도 및 대외 수상실적

서초구가족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언론에 수십차례에 걸쳐 보도된 바 있고, 더불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에서 각종 대외 수상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언론보도 사항

연 도	보도 추이	주요 내용	건 수
2021	기반 구축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권역 여성·가족시설 구축 완료 - 다문화가정 대상 우리말 교육 모집 - 서초 가족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추진 	4 (연합뉴스, 여성신문 등)
2022	사업 다각화 및 언론 노출 확대 (최다 1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양육자·아버지 교육 확대 - 다문화 노래대회·오케스트라 운영 - 손주돌보미 수당 인상 	13 (시민일보, 이뉴스투데이 등)

2023	협력·연계 사업 강화	- 아버지교실 및 부모교육 운영 - 다문화가정 안전교육 협약 체결 -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 공공기업 후원물품 전달	9 (매일신문, 소방방재신문 등)
2024	가족친화 브랜드화	- '다함께 신나는 서초가족 축제' 개최 - 다문화 가정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 초보아빠 대상 힐링대디 프로그램	3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등)
2025	수상·성과 중심 홍보 및 세대 통합 프로그램 확대	- 서울가족사업 성과보고회 2관왕 수상 - 가족 걷기축제·피크닉·스몰웨딩 지원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실시 - 세대공감 프로그램 및 청소년 후원	10 (OBS 뉴스, 문화일보 등)
총 계			39

○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지도점검)

구청에서 실시한 시설관리, 사업 운영, 종사자 채용 관리 및 직원 복무상황, 예산회계 관리 등 지도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음.

점검결과		
점검기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2021. 11. 9. ~ 11. 10.	- 근거 없이 활동비 사전 지급	- 담당직원 교육 실시 및 관련 지침 준수 철저
	- 직원 근태상태 미흡	- 복무 관련 직원교육 실시 및 근태 관리 철저
	- 계약 관련 부정확한 용어 사용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용어 사용 철저
	- 아이돌보미 장기 대기자에 대한 관리 소홀	- 3개월 이상 아이돌보미 장기대기자 명부 별도 관리 - 2022년 이후 연간계획 수립 시 대기시간 단축 방안 포함
	- 손주돌보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미비	- 2022년 연간계획 수립 시 손주돌보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포함
2022. 5. 26. ~ 5. 27.	- 서초 아이돌보미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 미실시	- 2022. 6월부터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 실시
2023. 7. 12. ~ 7. 13.	- 후원물품에 대한 인수증 보관 철저	- 인수증에 인수자 개별 서명 및 후원물품 관리철에 인수증 보관 등 인수증 관리 철저

2024. 7. 11. ~ 7. 12.	-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지침 준수	- 예산 변경 시 구에 사전협의 및 승인 요청
2025. 7. 1. ~ 7. 2.	-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미수립	-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수립 (2025. 7. 24.)
	- 예산과목 오편성	- 예산 계정과목 변경 (2025. 11. 28.)

○ 민간위탁 성과평가

서초구가족센터 운영 사무 전반에 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평가범위: 2021. 8. 1.~ 2025. 12. 31. 기간)한 결과 사업이 체계적으로 구조화·조직화시켜 운영되고 있고, 아이돌봄사업이 특화되어 있는 등 모범사례가 많으며,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인 양호한 관리와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등 이에 97.25점이라는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아래와 같이 받은바 있음.

평가결과

□ 평가점수 : 97.25점

※ 평가분류 :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60점 이상), 부진(60점 미만)

※ 75점 미만 시, 해당 수탁기관 재계약 배제

○ 상세 평가점수(3개 분야, 9개 영역, 15개 지표)

평가분야	배점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평 점
관 리	35	35	35	35	35	35
조직역량	30	28	27	27	27	27.25
사업역량	35	25	35	35	35	35
총 점	100	98	97	97	97	97.25

■ 민간위탁 적정성

- 본 동의안의 서초구가족센터에 대한 위탁 사무를 살펴보면, 시설관리(시설물 유지보수, 하자관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사업운영(가족관계·가족돌봄·가족생활 등 가족을 위한 다양한 통합사업,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자녀성장·관계향상 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 아이돌봄사업, 서초엄마힐링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물품관리 등 시설 운영에 수반되는 제반 사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러한 사무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기본이념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의 제정 취지 및 서초구가족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 아울러 위와 같은 위탁사무는 시설 운영 및 건강가정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등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는 업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 수행에는 효율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한편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등 지원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의 성격을 갖고 있고,
- 또한 서초구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¹⁵⁾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15)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한 전문자격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이 요구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서초구가족센터 시설 운영 및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사업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라기보다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운영 성격의 사무에 해당하는 점, 그 운영에는 관련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운영이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에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점, 구 직영 운영 시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관리업무 증가로 행정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등을 통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현재 서초구가족센터를 비롯한 구 관내 유사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본 민간위탁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필요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편 서초구가족센터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다문화가족 등 건강가정사업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도 일정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됨.

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2. 8. 16., 2025. 10. 1.>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 종합 의견

- 서초구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가족지원 전달체계로서, 가족상담·가족교육·돌봄지원·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양한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에 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현재 서초구는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가족관계·가족돌봄·가족생활·지역공동체 사업 등 가족지원 통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가족상담,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서초형 온가족 돌봄 체계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지역사회 가족복지 기반을 확충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 또한 시설 환경 개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일정한 운영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성과평가 결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이 확인되고 있음.
- 아울러 기존 위탁기간 동안 실시된 지도점검 결과 일부 행정·회계 운영과 관련한 지적 사항이 있었으나 대부분 시정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건·사고 발생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며, 최근 실시된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도 97.25점의 평가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도 위탁사무 수행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재계약에 대하여 적정 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서초구가족센터 운영 사무는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사무로서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해당하고 있고, 현재 수탁기관이 사업 수행 경험과 운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점, 성과평가 및 운영평가 결과가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에 일정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